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

제 1장 총칙

제 1조 (목적)

1.본 정책은 산일전기(이하 '회사')가 지속가능한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원칙과 절차를 수립하고,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2. 공급망 내 환경, 사회, 거버넌스(ESG)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, 정기적인 실사와 개선 지원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

1. 공급망(Supply Chain): 고객에게 최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부터 조달, 제조, 운송, 유통에 이르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를 포함합니다.

2. 협력회사(Supplier): 산일전기에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업체, 파트너사, 합작사를 의미하며, 자사의 하위 협력사까지 포함합니다.

3. 지속가능한 공급망 관리: 공급망 내 환경(E), 사회(S), 거버넌스(G) 리스크를 사전에 식별 및 예방하고, 정기적인 실사와 개선 지원을 통해 건강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조성하는 활동을 말합니다.

4. 녹색구매: 원부자재 조달 시 제품의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저사용, 자원소모 축소 제품 등을 우선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.

5. 협력회사 ESG 평가: 공급망 리스크 저감을 위해 매년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로, ' 자가진단(1단계) – 서면평가(2단계) – 현장실사(3단계) ' 의 과정을 포함합니다.

6. 환경·에너지 경영: 협력사가 에너지 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배출, 폐기물 재활용 등을 관리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친환경 경영 활동을 말합니다.

7. 윤리 및 거버넌스: 뇌물 수수, 횡령 등 부패 행위를 금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하며,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하는 원칙을 의미합니다.

제 3조 (적용 범위)

1.본 정책은 회사의 국내외 생산 및 판매법인, 지점 등 재무적 연결 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과 회사에 제

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협력회사, 파트너사, 합작사에 적용됩니다.

2. 협력회사는 본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, 자사의 하위 협력사에도 본 정책의 취지가 반영되도록 권장하고 리스크 식별 시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.

3. 본 정책은 각 국가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, 회사의 정책 또는 국제 기준이 더 엄격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더 높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합니다.

제 2장 ESG 관리 영역 및 기준

제 4조 (환경 보호 및 기후변화 대응)

1. 회사는 에너지 효율 목표 설정, 온실가스 배출 관리, 폐기물 재활용 확대 등 환경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협력사를 우대합니다.

2. 협력사는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친환경 자재 사용을 확대하며, 온실가스 배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.

제 5조 (인권 및 노동)

1. 협력사는 강제 노동 및 아동 노동을 엄격히 금지하며, 국제노동기구(ILO)의 핵심 협약 및 국가별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2.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인종, 성별, 종교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.

3. 협력사는 공급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강제 노동을 통해 생산해서는 안 되며, 강제 노동과 관련된 원재료·부품·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합니다.

제 6조 (안전 및 보건)

1. 협력사는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.

2. 작업장의 위험 요인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, 비상사태 대비 체계를 갖추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유지해야 합니다.

제 7조 (윤리 및 거버넌스)

1.협력사는 뇌물 수수, 횡령 등 모든 부패 행위를 금지하며,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유지해야 합니다.

2.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,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부당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

제 3장 리스크 관리 및 평가

제 8조 (협력회사 ESG 평가)

1. 회사는 공급망 리스크 저감을 위해 주요 협력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협력사 ESG 평가를 실시합니다.

2. 평가는 '자가진단(1단계) - 서면평가(2단계) -현장실사(3단계)'의 과정을 거치며, 거래 규모와 전략적 중요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
제 9조 (리스크 개선 및 지원)

1. 평가는 리스크 식별뿐만 아니라 협력사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, 회사는 식별된 미흡 사항에 대해 개선 방향을 제시합니다.

2. 회사는 협력사의 ESG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.

3. 개선 권고에도 불구하고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거나 개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, 회사는 거래 중단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.

제 4장 운영 및 소통

제 10조 (거버넌스 및 주관부서)

1. 구매부서는 공급망 ESG 관리의 주관부서로서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관련 업무를 총괄 관리합니다.

2. 주관부서는 중요 이슈 발생 시, 이사회 내 ESG 위원회에 보고하며,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가 최종 의사결정과 감독 역할을 수행합니다.

제 11조 (소통 및 고충 처리)

지속가능한 공급망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0	2026.05.13

1. 회사는 본 정책의 이행 성과를 홈페이지 또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통해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합니다.

2. 협력회사 및 이해관계자가 ESG 관련 위반 사항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'사이버 신문고' 등의 채널을 운영하며 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합니다.

부칙

1. 본 정책은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합니다.

2. 본 정책은 국제 협약, 주요 거래국의 정책, 국내외 관련 법규의 변화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정할 수 있습니다.